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의 학술연구분야 표절 및 중복게재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지침 적용

- 1). 이 지침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한 제반 연구윤리 문제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 2). 이 지침은 대학, 학술단체,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타 연구소 등 연구기관, 연구자지원기관 등의 관련 분야에서 적용할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침에 대한 적용 및 최종 판정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 행위를 말한다.
- 2)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적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5.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 1) 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 ①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 ②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6.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1)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 ②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 ③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3)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인용 및 출처 표시 등

- 1)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 2)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절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8.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
-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및 의혹이 제기된 경우 판정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 3)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7개월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4) 표절 및 중복게재 사안 관련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5)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를 연구자의 인사 및 연구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9.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과목 개설, 예방교육, 올바른 인용방법 교육 등 합리적이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및 유형, 판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소속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에 노력한다.
- 3) 정부는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과 건전한 학술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적용시점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 활용을 위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때에는 구성원의 합의 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해설

2009년 9월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술연구분야 표절 및 중복게재 등과 관련한 연구윤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2월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훈령이 나온 이후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윤리지침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학문 분야마다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인식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학술 분야의 연구자들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윤리 지침이 갖는 중요한 기능은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마련한 연구윤리의 지침이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대한 해설을 연재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해설이 모든 학술연구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해 유익한 정보가 되길 기대한다.

1. 연구윤리 지침 - 구성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가 제시한 연구윤리 지침은 ① 목적, ②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③ 지침 적용, ④ 용어의 정의, ⑤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⑥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⑦ 인용 및 출처 표시 등, ⑧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⑨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⑩적용 시점 등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윤리 지침 - ① 목적

이 지침은 학술 연구분야 표절 및 중복게재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은 연구자가 학술 연구를 할 때 부주의나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연구 전 과정에서의 높은 학문적 정직성 또는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연구는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높은 학문적 정직성 (academic honesty)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이라는 표현은 연구자들의 높은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표절 및 중복게재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발표에서 지적 정직성을 위반한 것으로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본 지침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술”이란 용어는 모든 학문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의미함(학술진흥 및 학자 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8710호). “학술 연구”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는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 활동을 의미하며, 연구과정에서 체계적,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일련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포함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연구에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는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연구, 교육, 기반 및 교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등에 이르는 모든 학문분야에 있어서 지식체계 및 실체가 포함된다.

○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해야 했을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의 문제가 자주 발생했지만,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시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판정 기준이나 검증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증폭되어 왔다. 즉, 우리 학계에서는 표절과 중복게재가 비도덕적이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지침은 과거처럼 표절과 중복게재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학술연구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판정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표절과 중복게재가 갖는 연구윤리의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높은 연구윤리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을 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학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윤리 지침 - ②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이유

○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이나 과정 그리고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구자들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연구를 수행해야 할 명백한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연구에 대한 공공 자원이 증가, 연구 규모의 대형화 및 분업화 등으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익한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 또한 연구자 간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연구자의 스트레스 심화, 연구자의 업적을 지나치게 양적 실적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시스템, 급성장한 연구 역량에 부합하지 못하는 연구윤리의 불감증 등은 연구자로 하여금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높은 연구윤리 의식과 실천이 요청되었다. 연구자가 모든 연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연구자 개인과 그가 속한 학문 공동체는 물론 국가의 연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이다.

2) 모든 연구 수행 과정의 의미

○ 일반적으로 연구는 계획, 수행, 결과 보고 등으로 이루어지는 바, 모든 연구의 수행 과정이란 연구를 계획 및 제안하고 그에 따라 실험, 관찰, 조사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및 발표하고, 동료 심사에 참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가 실천해야 할 주요 가치로는 정직성, 정확성, 공정성, 개방성, 사회적 책임성, 실험 대상에 대한 존중, 효율성, 업적에 대한 인정, 상호 존중, 조심성, 합법성 등이 있다.

3) 연구윤리의 내용

○ 학문 분야에 따라 다소 강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분야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¹⁾

① 연구의 계획, 실천, 결과 보고 등 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정직하고 충

1) 이인재,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윤리” 한국윤리학회편, 『과학기술과 윤리』 (서울:형설출판사, 2008), p. 261.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2006. 8)』, pp. 29-30. ; 송석수, 김석관,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 Brief』, 제9호, 2006. 1.; 김명진, “한국의 과학윤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과학사상』, 제43호, 2002.; A. E. Shamoo and D. B. Resnik,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실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 의도적인 속임수나 부주의, 자기기만(self deception) 등으로 연구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 이론, 데이터 혹은 결과물에 대한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을 하지 않아야 함.
- ② 연구결과와 출판 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시를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등 연구의 공로 배분을 합당하게 해야 함.
- ③ 실험실(연구과정)에서의 권위나 차별이 없어야 함(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 혹은 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원의 관계가 민주적이어야 하고, 여성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등).
- ④ 연구자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다했는지 숙고해야 함. 즉, 연구의 내용이 공공성에 반하지 않았는가,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가 공공성을 담보 했는가 등에 대해 항상 성찰해야 함.

4. 연구윤리 지침 - ③ 지침 적용

- 1) 이 지침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한 제반 연구윤리 문제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 2) 이 지침은 대학, 학술단체, 정부출연(연) 및 기타 연구소 등 연구기관, 연구지원 기관 등이 관련 분야에서 적용할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침에 대한 적용 및 최종 판정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윤리의 분야 중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를 둘러싼 논란은 모든 학문 분야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지침은 모든 학문 분야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논란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연구윤리는 강제나 제재보다는 연구자 및 학문 공동체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확립될 때 학문의 자율성 확보는 물론 국제적 수준의 연구 강국이 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연구윤리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학문 공동체의 특성이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최소한으

로 정하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학문 분야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분류한 연구 분야 대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을 말한다. 이 지침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각 학문 분야의 학술 연구 활동이므로 영화 및 음악 분야 등 예술 창작 활동도 포함한다. 단, 예술 창작활동은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2007. 1.2 6)』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영화 및 음악 분야 등 예술 창작 활동에서의 표절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주로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저작권침해의 사안이 많은 데 비해, 학술연구분야에서의 표절은 일차적으로 저작권침해의 부분을 포함하면서도 대체로 어문저작물과 관련되므로, 친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연구윤리적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를테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중복게재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표절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관련된다면, 학술연구분야에서의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윤리적인 문제가 결합된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하고 그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저작권침해에서는 표절 판단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을 적용하는데,

1)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의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

2) 차용된 양이 일정 정도는 되어야 하겠지만 양적으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이 함축되어 있는 중요 부분이 차용된 경우라면 표절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음(문화관광부, 『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2007년, pp. 8-11 참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학술단체, 정부출연(연) 및 기타 연구소 등 연구기관, 연구지원 기관 등이 자체로 표절 및 중복게재 지침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 “대학”이란 고등교육법(법률 9356)에 제시된,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기타 학

교를 포함한다. 이 이외의 비인가대학도 이 지침이 준용될 수도 있다. -“학술단체”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약학 및 의학 등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 분야의 단체를 말한다.

- “정부출연(연)”은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그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연구사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지침의 적용 및 최종 판정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절 및 중복게재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문 분야의 성격이나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어떠하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표절 및 중복게재의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기준 안에 모두 반영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확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는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특성과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 및 판단 기준을 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활동의 자유와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나 학회가 자율적으로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이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혼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각 기관이 자율적인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가 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지침은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일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기관별로 자율적인 기준 마련에서 생길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절 및 중복게재의 예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범위, 판정 기준 등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학회가 자율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구부정행위 중에서 표절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고, 가장 논란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무엇이며, 표절과 중복게재의 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혼란이 증폭되어 왔다. 대학이나 학회에 표절과 중복게재 여부 판정 요청이 많이 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대하여 각 학문 분야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 학문 영역에서 최소한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 마련이 요청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연구자들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 표절 및 중복게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음. 또한 표절 및 중복게재가 발생했을 때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 되어 표절 및 중복게재 문제의 윤리적 심각성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범위, 판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표절 및 중복게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가이드라인은 의심되는 행위가 표절 및 중복게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기본 잣대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학회 그리고 사회가 겪는 표절 및 중복게재 시비 논란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학문 분야에 따라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범위나 그 수준이 다양하고, 또한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은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일이므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따라서 표절 및 중복게재의 범위나 판정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전 학문 분야를 망라하여 폭넓게 연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5. 연구윤리 지침 - ④ 용어의 정의 - 1) 표절

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 표절의 한자어인 剽竊이나 영어 단어 plagiarism(‘훔치다’는 ‘plagiar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 속에 내포된 공통점은 “무엇인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brain child)”을 훔친다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인 절도(intellectual thievery)”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표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분야입니다.

-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에서 암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학문 활

동이 전적으로 연구자 혼자만의 아이디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되는 선행 연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더 발전되고 창의적인 저작물을 내는 것이 학술 활동의 기본이지만,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연구자로서의 도리는 자신의 저작물을 산출함에 있어 의존했던 모든 저작물의 원저작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표시로써 인용할 때 정확하게 출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일 때 표절이 발생합니다.

○ 표절은 심각한 윤리적 부정행위로서 심한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학술활동 전 과정, 즉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 보고 등에서 이루어지는 날조, 변조와 함께 표절을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표절은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는가?

○ 표절의 전형은 처음부터 타인의 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신의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에 발생함. 즉, 자신의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의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음.

○ 그러나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 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 된 경우도 표절에 해당됨. 이는 일종의 “우연적인 표절(accidental plagiarism)”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글을 자신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임.

☞ 연구자는 비의도적인 표절 또는 우연적인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연구를 할 때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자료를 잘 구분해야 함.

○ 표절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활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아 발생함. 그러므로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누구의 어디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독자에게 그 출처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 대부분 표절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2)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이란 무엇인가?

○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은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 일반적 지식이란 간단히 말해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함. 이를테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또는 ‘만유

인력은 뉴턴이 ‘발견했다’ 등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됨.

- 일반적 지식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즉 저자와 독자가 누구이고, 저자와 독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임.

- 그렇지만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함.

○ 아무리 일반적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새로운 창작 또는 사용자의 것으로 오인케 한다면 윤리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데, 이는 창작자의 양심과 제3자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임.

3) 표절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타인의 아이디어’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생각, 분석체계나 논리, 가설, 설명, 이론, 은유(metaphor), 결론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타인의 것에 의존하여 자신의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발전되었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를 해 주어야 함.

○ 타인의 저작물이란 학술적 저작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인쇄되었든 웹자료에 있든 타인이 쓴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말함.

- 이를테면, 전문 학술 서적,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기타 간행물에 발표된 논문, 학술발대회의 발표 논문 등 출판된 텍스트나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투고 중인 논문, 슬라이드 자료, 강의 교재, 웹 상에 올려놓은 자료 등 출판되지 않은 텍스트가 이에 해당됨.

☞ 교재나 교과서 류의 저작물은 충분한 인용이 되지 않고, 인용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인용은 가급적 하지 않은 것이 좋음.

4)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인용한 원저자의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임.

- 이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정한 이용(fair use)과 관련되는 것으로, 만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절임.

☞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은 아무리 출처를 밝히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저작물에서 종이 되고 나의 것이 주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인용된 부분은 출처를 밝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므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힌다는 의미는 인용한 저작물의 서지사항<저자명, 저서 또

는 논문 제목, 출판사항(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등>을 정확하게 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원본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물론 학문 분야에 따라 출처를 밝히는 방식은 다양함.<이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설할 것임>.

○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독창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허락을 받지 않거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임.

- 이때 표절이라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자신이 인용한 저작물의 원저작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시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자세임.

○ 타인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paraphrasing)하거나, 요약(summarizing) 했더라도 출처를 표시해야 함.

- 학술 연구 활동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표현 방식)로 말바꿔쓰기(다시 진술) 할 수 있지만, 이때 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함.

-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도 연구자는 원저작물에 있는 문장과 거의 같은 길이로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바꾸어 진술해야 하며, 원저작자의 논점이 말바꿔쓰기를 통해 다시 진술되게 하되, 새로운 자료와 시각을 덧붙임으로써 타인의 관점과 비판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특한 또는 중요한 표현이나 그림, 표 등을 직접 가져다 쓸 때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함

- 타인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 하고 이에 대한 출처를 밝혔지만, 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copying)을 인용부호 안에 넣지 않으면 표절임

- 타인의 저작물의 여러 부분을 활용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표시를 했지만 활용한 다른 부분은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경우 표절임.

○ 원저작물에 있는 글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가져와서 말바꿔쓰거나, 자신의 단어나 아이디어와 섞거나, 여러 원저작물에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가져온 단어나 아이디어를 합치거나, 원저작물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섞는 것도 표절에 해당됨.

- 이를 특히, 짜깁기 표절(mosaic plagiarism), 또는 patchwriting, paraphragiarism라고도 함.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글을 차용하되, 표절하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글을 뒤섞거나, 편집, 변형하여 표절된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지 못하게 함.

- 대체로 짜깁기 표절은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로 가득차 있을 뿐 자신의 비판적 해석이나 새로운 관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됨.

5) 학문적 부정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윤리 지침」에 나타난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이 중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임.

○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연구윤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문적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지침> 등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특히 표절은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행위들 중 대표적 학문적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음.

6) 왜 표절을 학문적 부정행위로 간주하는가?

○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이미지 또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것”으로 단어나 아이디어를 훔치는 사기(fraud), 글 도둑과 관련 있음.

- 학생들의 보고서나 출판된 논문, 책에 있는 아이디어나 표현의 일부나 전부를 훔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됨

-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미 제안한 아이디어나 개념(아직 일반적 지식이 되지 않음)을 길게 논의하면서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아 마치 발표자가 그러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쓴 최초의 사람인 것처럼 독자를 혼동케 했다면 이것도 역시 표절임.

○ 표절에서는 표절 대상이 도둑질에서와 달리 그냥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자는 원저작자, 수많은 독자와 저작물 관리자를 속여 자신의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원저작자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업적 관리자에게 혼란을 주며, 원저작자와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힘

- 따라서 연구자 간 공정한 경쟁과 학문의 발전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학문적 부정직의 전형임.

7) 한국학술단체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서 표절과 중복게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학술연구분야에서 표절과 중복게재의 문제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 이 지침에서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에, 중복게재는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국한하여 설명함. 또한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중복게재라는 용어 속에 자기표절의 의미를 포함시켜 통칭함.

6. 연구윤리 지침 - ④ 용어의 정의 - 2) 중복게재

4. 용어의 정의

2)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 국외에서의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사용 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표절(self-plagiarism),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 논문 쪼개기(salami slicing)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중복게재라고 규정했음. 자기표절(self plagiarism)은 아무리 자신이 쓴 저작물이지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I. Hexam(1999) 교수에 의하면, 횡령이나 보험사기에 연루될 때 자기 자신에게 훔치는 것이 가능하듯, 학술연구 분야 글쓰기에서 자기표절은 독자에게 이 자료가 다른 곳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저자가 새로 쓴 글에서 이전에 쓴 글이나 자료를 다시 사용할 때 발생하므로 자기표절의 핵심은 저자가 독자를 속이려 한다는 데 있음.

-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음. 자기의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자기 저작물 활용 및 보완 행위 자체를

문제시할 수 없다는 점과 자기의 저작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복제’라는 표현을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또한 표절하면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훔친 것인데, 자신의 것을 자기가 훔쳤으므로 자신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를 쓰기 보다는 중복게재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 미국 학계에서도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자체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을 들어 “재활용 사기(recycling fraud)”, “텍스트 재활용(text recycling)”, “텍스트 재사용(text reus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그렇지만 자신의 저작물이 일단 학술지에 발표되었으면,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인용을 할 때는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하여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함.

☞ 학술 저작물이 학술지에 출판되었을 때 대체로 저작권이 출판사에 이양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무리 자기가 쓴 것이지만, 출판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됨.

중복게재는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의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연구윤리의 문제로, 표절처럼 연구 부정행위로까지 간주되지 않을지라도 연구자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임.

- 중복게재는 학문적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표절과 달리 연구부정행위에 속하지 않지만 저작물을 출판할 때 지켜야 할 일종의 출판윤리를 위반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말할 수 있음.

○ 보통 중복게재와 이중게재라는 용어는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되는데, 두 논문이 동일한 가설, 데이터, 논점, 결론 등을 공유하면서도 충분히 서로 출처를 언급하지 않고 텍스트나 데이터가 다른 논문과 실질적으로 겹치는 것을 말함.

- 만일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 중복게재는 “이미 출판되어 저작권을 가진 자료에 새로운 혹은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이미 출판된 전체 논문이 아닌 일부를 다시 출판하는 것)

- 이중게재는 이미 다른 곳에 출판된 논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겹치는 논문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출판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함. 이런 경우, 이는 자기표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중게재는 중복게재의 한 형태가 됨(두 논문이 같은 가설, 결과, 결론을 가지기 때문).

☞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저자가 다른 순서로 기재됨.

○ 전 세계적으로 각 학문분야마다 중복게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네덜란드 의학계열에서 출판된 논문 중 20%가 다른 학술지에 중복으로 출판됨.

- 3가지 유명한 외과의학 저널에서는 게재 논문의 1/6이 중복게재의 형태를 보여줌.
- 중복게재나 이중게재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이 있음.

- ☞ 저자가 동일하든 안하든, 저자 순서가 일치하든 그렇지 않든 저자가 중복됨.
- ☞ 동일하든 하지 않든 연구결과가 중복됨.
- ☞ 동일한 연구 재료이든 아니든 연구 재료가 중복됨. 이 중 가장 일관된 패턴은 서로 출처(cross reference)를 언급하지 않음.

중복게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논문 쪼개기 출판(fragmented publication, salami publication)과 논문덧붙이기 출판(imalas publication)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salami는 이태리식 소시지인데 보통 얇게 썰어서 각종 요리에 쓰이는 바, 이처럼 하나의 연구 결과 얻어진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salami technique라고 함.

- ☞ 한 편의 논문은 방법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의 논문은 대상 중의 일부를 강조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말함.
- ☞ 살라미 기법이란 하나의 연구 자료를 '최소 출판 단위(least publishable unit, LPU)'로 잘게 잘라 내어 각각을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임.

- salami technique과 반대로 이미 출판된 논문에 일부 결과나 임상례를 추가해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논문 수를 부풀리는 것을 imalas technique라고 말함.

- ☞ 작은 연구들을 나중에 다 묶어서 다른 큰 한 편의 논문을 만들어 내는 방법임.
- ☞ 이말라스 기법이란 이전 논문에 일부 결과나 대상자의 수를 덧붙여 출판하는 것으로 제목은 다르지만 이전 연구와 겹치거나 연관된 측면을 보고하는 것으로 저자의 순서가 다르거나 저자가 아예 다를 수 있음.

☞ 중복게재가 문제되는 이유

-여러 가지 자원을 낭비한다. 하나의 논문이면 족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만들면 잡지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결국 여러 가지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잡지를 출판하기 위해서는 편집자, 심사자가 필요 없는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하고 논문 출판 이후에는 색인자가 다시 논문을 색인하여야 하며 검색자는 같은 논문을 두 번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동일 자료가 두 번 산정되면 전체적인 근거 정도를 평가할 때도 두 번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

-중복게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7. 연구윤리 지침 - ⑤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 1) 표절

<http://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08104&nPage=1>

5. 표절의 판정

1) 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 ①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②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 ③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 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 표절은 학술연구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 중의 하나임.

○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일이므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함.

- 세부 학문의 특성이나 인용 및 출판의 관행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표절을 했다고 의심 받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표절을 했는지 아니면 비의도적인 실수에 의한 것인지, 표절을 통해 표절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으며, 원저작자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표절자는 원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 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임.

- 또한 "아주 경미한 인용상의 실수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매우 포괄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속성이 있기 때문임.

○ 표절은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의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 쓰거나 아니면 아주 사소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거나 데이터, 그래프,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출판하는 것을 말함.

- 이는 연구자가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위반하는 것이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학술 연구에서 정직해야 할 기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저작권법을 위반함으로써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표절의 판정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

는 것임.

타인의 아이디어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함
타인의 출판된 저작물	
타인의 미출판된 저작물	

2)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란?

○ 연구자가 학술연구분야에서 타인의 아이디어 저작물을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출처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지키지 않았을 때는 표절에 해당됨.

- 발표는 일반적으로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인쇄된 매체를 활용하여 full paper나 abstract로 하거나 인쇄되지 않은 슬라이드나 구두로 하는 경우를 말함.

- 출판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인쇄 매체인 학술지에든 full paper나 abstract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말함.

-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란 발표물이나 출판물 등 타인의 저작물 속에 담겨 있는 고유한 생각이나 연구 착상(가설), 방법(분석체계나 논리), 이론, 전개 방식 등을 말함.

☞ 이를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됨.

3)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란?

○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독특한 표현(단어나 문장), 그림, 표, 사진 등에서 일부든 전부든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원저자가 쓴 것 그대로(verbatim)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임.

- 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때에는 인용부호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하는 데, 인용하는 저작물이 3줄 이내의 짧은 글이면 큰 따옴표를, 3줄 이상의 긴 글이면 별도의 블록으로 들여쓰기(indentation)를 하여 인용문임을 밝혀주어야 함.

○ 타인의 텍스트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란, 자신의 말로 요약하거나 말 바꿔쓰기(paraphrasing)로 이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절에 해당됨.

☞ 말바꿔쓰기(paraphrasing)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뜻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말바꿔쓰기는 두루뭉술하게 인용하여 인용된 글과 저자의 글이 혼용되는 경우, 문장의 어미나 뉘앙스를 달리하고 본인의 생각을 살짝 덧붙이기 경우 등과 같이 간접적 표절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원저작물에 있는 몇 개 단어를 바꾼다고 하여 표절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원저작물의 핵심 아이디어가 살아 있는데 출처를 명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문맥을 바꾼다고 해도 표절 혐의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저작물을 인용하되 말바꿔쓰기를 제대로 하려면 원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원저작물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색깔이 담긴 문장으로 풀어 써야 한다.

☞ 타인의 저작물 요약하기(summarizing)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으로, 말바꿔쓰기와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된다. 즉, 원저작물의 내용과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용어로 표현하되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4)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 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란?

○ 발표되지 않았거나 출판되지 않는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텍스트의 내용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할 때도 표절임.

- 이를테면, 동료심사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연구계획서나 제안서, 투고 논문 그리고 타인의 강의 자료, 웹 자료, 학술적 토론이나 개인적 대화(personal communication) 등에 있는 아이디어나 글, 표, 그림 등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 특히 동료심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연구계획서나 투고 논문의 경우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올바른 인용인지에 대하여 합의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렇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상황에 맞게 원저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술연구분야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자신이 먼저 발표 또는 출판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는 학문 연구 윤리에 크게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8. 연구윤리 지침 - ⑤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 2) 중복게재의 판정

<http://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08132&nPage=1>

5. 중복게재의 판정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 ①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②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 중복게재의 판단은 비교되는 두 저작물이 학술지에 게재되었는지의 여부, 중복의 범위와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음. 또한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중복게재의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 지침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며, 최종 판단은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기준을 추가할 수 있음.

○ 중복게재의 판단은 두 비교되는 저작물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실질적으로 유사성의 여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란?

○ 비교되는 두 논문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지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기 위해서는 그 논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 즉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서로 달라야 함.

-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 논문에서 가설, 자료(표본), 논의(고찰), 결론 등은 각각 그 자체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논문의 독창성이나 질적 차이를 드러내 주는 데 핵심 역할을 함.

- 따라서 비교되는 두 논문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각각 또는 연계하여 얼마나 동일 또는 유사한가로 판단할 수 있음.

☞ 단순히 외형적으로 얼마나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가 만이 아니라, 비록 양이 적더라도 그 논문의 실질적 가치를 갖는 핵심적 아이디어가 동일 내지 유사하다면 중복에 해당됨.

○ 동일하다는 의미는 비교되는 두 논문 간에 가설, 표본, 결과 등이 같은 것으로 완전히 동일한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복제(copy)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함.

○ 유사하다는 것은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고 약간 변형했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핵심 아이디어나 논리, 구조, 전개 방식 등이 거의 같다는 의미임.

○ 상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제시하기가 어렵지만, 비교되는 두 논문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를 말함.

○ 중복게재는 비교되는 두 논문의 언어가 동일하든, 다른 언어로 번역하였든 동일 내지 유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이미 다른 곳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똑같이 또는 약간 바꾸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다른 곳에 한국어로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똑같이 약간 바꾸어 영어 등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위의 두 가지 경우 만약 두 학술지 편집인에게 허락을 받고 두 번째 게재되는 학술지에 중복게재 임을 밝히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음.

3)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

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됨.

- 중복게재의 유형을 보면 이전 논문을 동일하게 또는 거의 같게 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 논문의 일부(몇 문장, 표 혹은 그림 등)를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대체로 국내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임.
-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는 자신의 논문에서 활용하였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함. 이는 마치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분을 활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것과 같음.
- 통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최초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발표된 내용의 일부든 거의 대부분이든 출처표시를 하지 않으면 독자나 업적 평가 기관에서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하게 됨. 이는 바로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비윤리적인 행위임.

중복게재의 유형

-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는 유형
- 같은 내용이지만 짧게 단축하여 발표하는 유형
- 부분적인 내용의 추가, 삭제를 통해 수정한 후 발표하는유형
-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발표하는 경우

3)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란 무엇인가? 왜 연속논문은 제외되는가?

○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논리적으로든 내용의 완성도든 의미가 있는 데, 업적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임.

- 중복게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과도한 연구의 경쟁, 많은 업적의 산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보다 쉽게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과 관련이 있음.
- 연구의 논리성이나 가치 등에서 볼 때 하나의 논문으로 족한 것을 업적을 늘리기 위해 여러 논문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음.
- 그러나 어떤 논문의 경우 한 편의 논문 안에서 논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 때 편

집인과 상의하여 연속(시리즈) 논문을 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음.

○ 하나의 연구를 수행한 후 일부분만 다른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갬 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유사한 이론적 틀과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한 주제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는 유사 주제 논문 양산하기, 동일한 연구의 틀을 사용하면서 자료만 바꾸어 새로운 논문으로 게재하는 이란성 쌍생아 논문 생성하기 등도 중복게재에 해당됨.

9. 연구윤리 지침 - ⑥ 표절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 - 1)

<http://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08160&nPage=1>

6. 표절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

1) 다음에 해당되는 유형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 ②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 ③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

○ 표절은 인용과 관련되는 문제이면서 학문 분야마다 지금까지 표절에 대하여 지녀온 관행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준거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복잡한 특성을 지님.

○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표절의 판정 기준은 국제적 기준과 차이가 없도록 했지만, 학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공통적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함. 따라서 학계에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표절에 해당되지 않은 유형을 제시함.

1)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란 무엇인가?

○ 저작권법은 창작을 보호하고 표절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법이지만, 아이디

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한다고 하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을 따르고 있음.

- 아이디어나 정보 또는 사실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는 없음. 저작물 전체 가운데 한 줄이나 한 단락 또는 중요하지 않는 일부분만이 유사하다면 저작권침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나, 어느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근본적인 구조가 다른 저작물에서 그대로 모방되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

- 이는 문자적 복제나 아이디어의 모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을 의미함.

-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표현 또는 아이디어는 출처표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임.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함.

2)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란 무엇인가?

○ 짜깁기에 해당하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원칙이므로 이를 적용한 것임.

- 짜깁기는 출처표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짜깁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처표시를 하든지,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표시를 안 하든지(백과사전류에는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의 경우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짜깁기이지만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음.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과사전류와 인터넷 검색 엔진(네이버나 야후 등)에 올라와 있는 자료 등이 이에 해당됨. 또 다른 예로, 어떤 저자가 [판례 100선]이라는 판례 모음집을 출간한 경우, 종교학자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라는 책을 내면서 다양한 책들의 견해들을 모아놓은 경우 등도 이에 해당됨.

3)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절이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란 무엇인가?

○ 표절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쉽게 판정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임. 따라서 표절 시비와 관련하여 관련 학계나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절이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는 경우는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임.

10. 연구윤리 지침 - ⑥ 표절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 - 2)

<http://grp.or.kr/index.jsp?m1=5&m2=1&m3=1&prefix=1021&nPostIndex=108188&nPage=1>

6.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

2) 다음에 해당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 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에 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잡지 등에 쉽게 풀어쓴 경우
-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3)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중복게재의 경우도 표절과 마찬가지로 판정을 할 때 기준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중복게재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학계에서 그동안 준용해 온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대표적인 유형을 모아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예시함.

○ 비록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이라고 해도, 이미 게재된 것을 이후의 학술지에서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면 중복게재가 아님.

- 따라서 연구자는 한 번에 하나의 학술지에 다른 곳에 이미 발표하지 않는 새로운 논문을 투고해야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이전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하

여 중복의 여부에 대해 투고 학술지 편집인에게 알리는 것이 연구자의 올바른 자세임.

○ 출처표시를 했다면, 이차게재,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한 학술지 게재 논문, 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이중게재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1)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란?

○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는 정당한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로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나, 이 경우도 학회의 관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번역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로 별도의 저작권을 갖게 되고, 자신의 논문을 번역하여 다른 국가의 학술지에 실는 것은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독자가 중복게재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에서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물론 이때에 연구 업적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재출간(re-publication)하는 경우에도 최초 게재한 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야 함.

2)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여기서 “출판된”이라는 의미는 학술지 이외에도 학술발표 대회의 논문 초록집(정규 학술지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초록만을 실는 경우도 있고, 논문 형식을 갖춘 초록집도 있고, 2-4쪽의 extending abstract의 경우도 있음)과 간이 인쇄물도 포함됨.

- 학술발표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논문의 경우도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전에 발표 논문을 접수받아 심사를 한 후 발표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 신청을 하면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 그렇지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후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 및 보완하여 또는 그대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음.

- 표절의 위험성이 있는 그림, 표, 다른 자료 등을 인용할 때에는 허락을 얻거나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함.

- 이때 출처는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000 45(200-235)

(2009)" 등으로 표시함.

○ 학술대회 발표문 이외에도 연구용역 보고서, 학위논문 등 이른바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가 붙지 않은 간행물에 발표된 저작물을 이후의 학술지에 게재할 때도 출처를 표시하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음.

- 이른바 회색문헌(grey literature)이라고 불리는 준학술적이고 비공식적인 성격의 글을 학술지에 다시 투고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면 중복게재가 아님

○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거나, 다른 정보나 자료를 첨가하여 보다 심화 발전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음.

- 학술연구분야의 특성상 연구자는 자신의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전 연구와 연계하여 심화연구를 하여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저작물을 산출하기에 중복게재로 이러한 정당한 학술연구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를 적극 반영함.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의 이후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 도리이며, 독자에게 정직함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모아서 저서로 출판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함. 그래야 독자나 연구업적 관리 기관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을 새로운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 때문임.

4)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경우란 무엇인가?

○ 학술지에 이미 발표했던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비학술 단체의 저널 (교양 잡지 등)에 대중을 위해 쉽게 풀어쓰거나 요약한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음.

- 이는 학술연구의 성과를 전문가 집단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 반대로 비학술단체의 저널에 실린 자신의 저작물을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활용할 때 중복게재인가 아닌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활용할 때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근거로 할 때 출처를 밝히는 것이 옳음.

5)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란 무엇인가?

○ 많은 학술지의 경우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는 데, 이러한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수행 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어 새로운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

- 종설(review) 논문처럼 명확한 출처를 밝혀 기존의 논문 내용을 통합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 업적 인정율이 낮은 교내 학술지(working papers 포함)나 기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인정율이 높은 학술지에 게재할 때 그 출처를 밝히는 경우

- 물론 이때 중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업적 산정은 해당 기관에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적용해야 함.

6)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이 가이드라인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이라고 제시했지만, 학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또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임.

11. 연구윤리 지침 해설 - ⑦ 인용 및 출처표시 등 -1)

<http://www.grp.or.kr/index.jsp?m1=5&m2=1&m3=1&prefix=1021&nPostIndex=110428&nPage=1>

7. 인용 및 출처 표시 등

- 1)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 2)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 인 것이 되는 적절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표절 및 중복게재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활용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발생하므로 자신이 활용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또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준다는 의미에서 인용을 제대로 해야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인용은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아 이용하거나 인용부호를 적절히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서 이용하는 것임.

- 이에 비해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원저자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학술 연구에서 인용과 표절은 상반된 개념으로 인용은 학문 발전을 위해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이어주는 긍정적인 가교의 역할을 함.

1) 올바른 인용의 원칙은 무엇인가?

○ 학술연구분야에서 흔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전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타인의 주장이나 개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인용해야 하고,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함.

○ 연구자가 활용한 저작물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표절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기도 함.

○ 연구자가 올바르게 인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verbatim, copying), 일부 단어를 말바꿔 쓰기(paraphrasing)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summarizing),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의 기여에 인정하고(credit),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부호(“ ”)로 표시하고,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색깔이 담긴 언어로 표현되도록 하며 이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고,
-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의견, 비판점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인용하든 말바꿔쓰기를 하든 출처를 밝혀야 하고,
-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 웹 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는 출처를 밝혀야 함. “한국에서 매년 심장병으로 몇 사람이 사망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그 해답을 말할 때 누군가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게 되므로 그 출처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혀야 함.

2) 적절한 범위의 인용이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적절한 출처표시와 관련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함.

-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인용의 분량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종이 되고 자신의 것이 주가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인용해야 함을 의미함.
-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그 인용의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 즉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그대로 가져다 활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됨.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학문 분야별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출처표시 방법에 적절하게 따르면서 그 인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임.

review 논문(종설 논문)의 경우 다소 예외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설 논문은 특정 학문 분야의 최근 이론적 동향이나 연구 성과를 개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 및 비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전체 논문의 양에서 볼 때 자신의 얘기가 많지 않고 인용한 것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 연구윤리 지침 해설 - ⑦ 인용 및 출처표시 등 - 2) 출처표시 방법

<http://www.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10456&nPage=1>

<출처표시 방법>

1) 출처 표시의 목적과 의의

○ 학술연구분야에서 제시되는 자료나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주(註)나 참고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주나 참고문헌이 없는 연구 논문은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윤리성에서도 의심받기 쉽기 때문에 참고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각 학문 분야별로 출처표시를 하는 방법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인용을 하는 기본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음.

- 즉, 인용은 연구자가 활용하는 저작물을 표시해 주고, 그 원저작자에게 공(credit)을 돌려 존중할 뿐만 아니라, 독자가 원한다면 스스로 출처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렇지만 인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해야 하며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옳지 않음.

2) 출처 표시의 방법

○ 논문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인용한 자료에는 그때마다 출처를 표시해야 함. 비록 적절한 관례에 따른 인용이라 할지라도 인용문이 본래 속해 있던 문헌이나 자료

명, 페이지 수 등을 일정한 형식으로 밝혀야 함.

-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각 학문 분야의 오랜 관행과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 라인에서는 어느 한 양식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각 학문 분야마다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해 온 출처표시 방법을 존중함. 따라서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제시하는 출처표시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따를 것을 권장함.

주의 위치에 따른 종류

1) 내주(reference citation in text): 본문 중에 괄호 안에 주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지적 참조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자명과 연도 등을 적고, 인용문헌은 논문 맨 뒤의 참고문헌으로 제시함

2) 각주(footnote)는 주를 달아야 하는 내용이나 부분이 있는 면의 본문 하단에 주를 표시하는 방식

3) 후주(미주, endnote)는 각 장이나 절의 끝 또는 논문의 말미에 모든 주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각주와 미주는 위치만 다를 뿐 작성 양식은 동일함

인용의 양식

* 각 학문 분야별로 인용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

1) Chicago (or Turabian) style : 학문 전 분야에서 사용

2) MLA style : 대체로 인문학에서 사용

3) APA style : 사회과학, 교육학, 공학, 경영학 등에서 주로 사용

4) CSE style: 생물학

5) AMA style: 생의학, 의학, 간호학

6) AIP style: 화학

7) AMS style: 수학, 컴퓨터 공학 등

3) 출처표시의 실제

 인용한 자료는 정해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여기서 샘플로 제시하는 출처표시의 형식은 APA 양식으로 각 학문 분야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행본

- 각주

- 홍길동, 『한국사회와 연구윤리』 (서울:갑돌출판사, 2007), 20-21.
- 홍길동, 김행복, 『표절과 중복게재』 (서울:갑순출판사, 2008), 23.
- 박다복편, 『연구윤리의 강국을 향하여』 (서울:청람출판사, 2009), 20.
-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04-5), 최슬 기억,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4-5)』 (서울:천사출판사, 1980), 150-52.
- Charles Lipson, Doing Honest Working in Colle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23-24.
- Dan Reiter and Allan C. Stam, Democracies at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15-26.
- William Strunk Jr. and E. B. White, The Elements of Style, 4th ed. (New York: Longman, 2000), 12.
- David Taras, Frits Pannekoek, and Maria Bakardjieva, eds., How Canadians Communicate (Calgary, AB: University of Calgary Press, 2003), 10.

☞ 글쓴이 이름, 책 제목, 출판 사항(판수, 발행지역, 출판사, 발행연도), 참조 페이지(쪽수) 순으로 기재

☞ 국내서 책명은 『 』, 진하게,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외국의 책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함.

- 위의 각주에 대한 참고문헌

- 홍길동. 『한국사회와 연구윤리』 . 서울:갑돌출판사, 2007.
- 홍길동, 김행복. 『표절과 중복게재』 . 서울:갑순출판사, 2008.
- 박다복편. 『연구윤리의 강국을 향하여』 . 서울:청람출판사, 2009.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04-5. 최슬 기억,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4-5)』 . 서울:천사출판사, 1980.
- Lipson, Charles. Doing Honest Working in Colle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Reiter, Dan, and Allan C. Stam. Democracies at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Strunk, William, Jr., and E. B. White, The Elements of Style, 4th ed. New York: Longman, 2000.

● Taras, David, Frits Pannekoek, and Maria Bakardjieva, eds. How Canadians Communicate. Calgary, AB: University of Calgary Press, 2003.

☞ 참고문헌에서는 국내서의 경우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고, 국외서의 경우 저자 성(First Name)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기재함.

☞ 국외서의 경우 각주에서는 이름, 성 순으로 기재했으나 참고문헌에서는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함.

☞ 각주에서 표시했던 페이지는 생략함.

- 내용주(저자-발행연도 표기법)

……연구윤리 강국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홍길동, 2007:20). 또는 (홍길동 2007, 20). 왜냐하면 ……

☞ 이 내용주를 참고문헌으로 표기할 때는 홍길동(2007). 『한국사회와 연구윤리』. 서울:갑돌출판사.

- 각주에서 같은 단행본을 여러 번 인용할 경우, 중복되는 항목은 줄여서 표기함.

☞ 예) 홍길동, 『한국사회와 연구윤리』 (서울:갑돌출판사, 2007), 20-21.

위의 책, 30-32. 또는 *ibid.* 30-32.

예) 홍길동. 『한국사회와 연구윤리』 (서울:갑돌출판사, 2007), p. 20.

박다복편. 『연구윤리의 강국을 향하여』 (서울:청람출판사, 2009), p. 5.

홍길동, 앞의책, p. 20. 또는 홍길동, *op. cit.*, p. 20.

○ 논문

홍길동, “표절의 의미와 유형,” 홍길동, 김행복, 『표절과 중복게재』 (서울:갑순출판사, 2008), 23.

김다복, “중복게재의 윤리적 문제”, 『연구윤리』 제100호, 2008년 가을, 200-202.

박슬기, “연구윤리 강국을 위한 종합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군대학교, 2000), 35.

Charles Lipson, "Why Are Some International Agreements In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 (Autum 1991): 495-538.

Nicole Childs, "The Impact of Hurricane Floyd on the Children of Eastern North Carolina" (Master's thesis, Eastern Carolina University, 2004), 25.

☞ 논문 기재의 순서는 글쓴이 이름, 논문 제목, 단행본(또는 간행물) 이름 권수와 호수, 계절 또는 월명, 참조 쪽수임.

☞ 위의 논문을 참고문헌에 기재할 때는,

홍길동. “표절의 의미와 유형.” 홍길동, 김행복. 『표절과 중복게재』. 서울:갑순출판사, 2008.

김다복. “중복게재의 윤리적 문제.” 『연구윤리』 제100호, 2008년 가을, 200-202.

박슬기. “연구윤리 강국을 위한 종합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군대학교, 2000.

Lipson, Charles. "Why Are Some International Agreements In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 (Autum 1991): 495-538.

Childs, Nicole. "The Impact of Hurricane Floyd on the Children of Eastern North Carolina." Master's thesis, Eastern Carolina University, 2004.

○ 기타

- 웹 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전자 주소를 표기해 줌.

손감동, “표절과 올바른 인용” 『연구윤리』, 2008. 7.

http://www.krf.or.kr/KHPapp/board_tpl/noti_bodo.jsp?bbs_seq=628&sub=menu_08
(접속일자 2009년 2월 12일).

“ORI Policy on Plagiarism,” <http://ori.dhhs.gov/education/>(accssed Feb. 12, 2009)

○ 인문·사회과학 분야와는 달리 자연과학 분야(이학, 공학, 의학 및 농수산학 등)에서 인용한 문헌에 대한 표시는 일반적으로 인용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붙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참고문헌 목록에 나타냄.

☞ 번호, 필자명, 학술지나 단행본의 이름, 권(호)수, 페이지 및 연도 표시.

-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인용 문헌 목록에서는 흔히 학술지명을 간단히 줄여서 표기. 권(호)의 번호는 대체로 고딕체로 적고 연도는 괄호 안에 넣음. 책이름이 나타난 경우는 논문 제목을 쓰지 않음.

13. 연구윤리 지침 해설 - ⑧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 1)

<http://www.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10484&nPage=1>

8.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

○ 그동안 대학이나 학회 그리고 연구기관에서는 학술연구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되어 온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자체 규정과 이에 따라 사안 발생 시 이를 검증할 심사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함.

○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연구자 개인만이 아니라 연구기관에도 요구되므로 연구기관이 이에 필요한 규정 마련 및 공정한 절차 확립 등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것임.

1) 대학 및 연구기관 자체 심사 제도 마련 필요성

○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을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표절 및 중복게재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규정과 이를 공정하게 심사할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표절 및 중복게재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음.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이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이 소속 행위자가 행한 표절 및 중복게재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임.

○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과 심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학술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자 간 또는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이나 심사 제도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각 기관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 심사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표절 및 중복게재의 범위, 표절 및 중복게재

의 제보 접수 및 심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재의 종류 및 기준 등 <연구윤리지침>을 참조하되,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14. 연구윤리 지침 해설 - ⑧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 2)

<http://www.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10512&nPage=1>

8.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및 의혹이 제기된 경우 판정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표절 및 중복게재 행위에 대한 제보에 대해 타당한 이유없이 판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각종 의혹이나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불신을 최대한 막기 위해 즉시 판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시한 것임.

판정 절차를 즉시 개시할 필요성

○ 각 기관은 소속 및 가입된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를 했다는 의심이 가는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제보자에 의해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판정 절차를 개시해야 함.

- 그 이유는 조사 및 판정을 지체하게 되면 관련 구성원 간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가중됨으로써 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나아가 학문 공동체의 연구윤리 확립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임.

- 판정 절차는 각 기관이 마련한 심사 제도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사안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대내·외의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15. 연구윤리 지침 해설 - ⑧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 3)

8.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3)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7개월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4) 표절 및 중복게재 사안 관련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기관 간 협의 하에 결정한다.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자체 판정 기간의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관련 구성원 간 또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최근 산학협력 등 연구기관 간 협력 연구가 증가하면서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관여한 연구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가 발생했을 때 그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1) 왜 7개월 이내에 자체적으로 판정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 표절 및 중복게재의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심각할 때는 예상외로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안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7개월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판정을 내려야 함.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7개월로 잡은 근거는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구진실성 검증의 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여러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생길 혼란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함.

– 최소 7개월 이내 자체적으로 판정하되, 그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거나 불복할 경우 보다 전문적인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참고: <연구윤리지침> 제14조에 규정된 검증 기간

전체적인 검증기간은 신고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며, 이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제15조 4항), 예비조사로

부터 판정까지는 6개월 이내 이루어져야 함(제17조 2항)

◆ 미국 ORI의 표준 모델에 따른 조사 절차 (30일 이내)

· 제보 → 예비조사(60일 이내 완료) → 본조사(120일 이내 완료) → 판정(보고) →
이의제기(120일 이내 완료) → 후속조치

○ 검증절차의 추가 또는 분리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절차와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자체규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조사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유지되어야 함.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사안이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표절 및 중복게재의 사안이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될 때는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련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생겨날 수 있는 관련 기관 간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음.

– 표절 및 중복게재의 문제는 관련 사람들의 관점이나 소속된 기관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기준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나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함.

16. 연구윤리 지침 해설 - ⑧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 4)

<http://www.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10568&nPage=1>

8.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5)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 결과를 연구자의 인 사 및 연구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 결과를 정당하게 피이드백함으로써 표절 및 중복게재로 인하

여 부당하게 업적 인정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 것임. 이는 궁극적으로 연구자로 하여금 표절 및 중복게재를 하지 않도록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고, 연구자 간 공정한 경쟁 유도를 명시한 것임.

<왜 표절 및 중복게재의 결과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가?>

○ 표절 및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될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로써 자신은 물론 소속된 기관 또는 학문 공동체의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훼손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어떤 제재든 각 기관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어 이에 근거해야 함.

- 표절 및 중복게재의 정도가 심할 경우 승진,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부당하게 이중으로 산정된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취소 내지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차게재처럼 중복게재이지만 허용되는 경우, 연구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연구자에게 가장 유리한 업적 하나만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표절 및 중복게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표절 및 중복게재를 하지 않도록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재 방안의 마련과 공정한 시행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각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음.

17. 연구윤리 지침 해설 - ⑨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 1)

<http://www.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10596&nPage=1>

9.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과목 개설, 예방 교육, 올바른 인용 방법 교육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표절 및 중복게재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의

식의 부재와 관련이 있으므로 각 기관은 연구자의 높은 연구윤리 의식의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한 것임.

특히, 국내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발생 원인이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로서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하여, 또는 올바른 인용 방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명시한 것임.

1)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방안

○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위해서는 표절 및 중복게재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자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함.

- 따라서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대학,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는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윤리 과목의 개설

☞ 연구윤리 전문가에 특강 및 워크숍

☞ 사례를 통한 표절 및 중복게재의 이해와 예방법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 학술지 논문 투고 시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자기서명서 (plagiarism statement)의 제출 등

-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가치와 사회적 책임감 제고, 표절 및 중복게재의 의미와 유형, 피할 수 있는 방안, 올바른 인용법 등에 초점을 둠.

○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교육은 일시적인 교육이 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함. 또한 그 대상도 학부생, 석·박사과정생, 전문 연구자와 교수 등으로 광범하게 확대되어야 하며,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음.

18. 연구윤리 지침 해설 - ⑨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 2)

<http://www.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10624&nPage=1>

9.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및 유형, 판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소속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에 노력한다.

각 기관이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속 연구자 또는 외부 연구자가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표절 및 중복게재의 예방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임.

<왜 표절 및 중복게재의 규정 마련과 공지가 필요한가?>

○ 연구자들은 흔히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무엇이며 얼마나 심각한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인가에 대해 잘 몰라서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대학이나 학회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는 소속된 연구자들이 표절과 중복게재의 개념 및 유형, 이를 위반하게 되는 이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판정 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책자나 웹 자료를 만들어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한 각 기관의 정책을 명시하여 소속 및 가입된 연구자들이 표절 및 중복게재를 했을 경우 어떤 처벌 내지 제재를 받게 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스스로 표절과 중복게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소속 또는 가입된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표절 및 중복게재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표절 및 중복게재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함.

19. 연구윤리 지침 해설 - ⑨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 3)

<http://www.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10652&nPage=1>

9.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3) 정부는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과 건전한 학술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각 연구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노

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시한 것임.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가 높은 연구윤리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해야 하겠지만, 연구자가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함.

- 바로 이러한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 정부(특히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책임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나 한국연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예방 노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함.

☞ 각 기관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교육을 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지원

☞ 각 기관에서 유익하게 참고할 수 있는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교육 자료(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제작 및 제공

☞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국내외의 최근 동향과 사례 수집 및 분석 자료 제공

☞ 각 기관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을 위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함.

20. 연구윤리 지침 해설 -⑩ 적용 시점

<http://www.grp.or.kr/index.jsp?m1=5&m2=1&m3=1&nPostIndex=110680&nPage=1>

10. 적용 시점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 활용을 위하여 소급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구성원의 합의 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새롭게 제정되는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지침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이에 관한 연구자 및 각 연구기관의 혼란 방지를 명시함.

이 지침을 참고로 하여 각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규정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한 것임.

<이 지침의 적용 시점을 지침을 공표한 3개월 정도의 뒤인 2010년 1월 1일로 명시한 이유>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이 지침을 공표한 날로부터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자체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 함.

- 적용 시점을 이 지침 공표 후 3개월 후로 한 이유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지침에 의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그러므로 각 기관에서는 이 지침이 공표된 후 3개월 이내에 자체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이 지침이 공표된 후 3개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판정은 그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 지침을 소급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야 함.